

꿈을 키우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우듬지 교육공동체

학생보호 및 안전하고 **등**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2022 학 교 생 활 인 권 규 정



가 평 중 학 교

Gapyeong Middle School

목 차

1. 학교생활인권규정 총칙	1
2. 교내생활	2
3. 교외생활	5
4. 정보통신	5
5. 학생생활규정	6
6. 학생자치	14
7. 학생생활인권규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	17
8. 학업중단 예방	22
<별첨1>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	23
<별첨2>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규정	35

제1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가평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생활인권규정 제정의 기본목적은 학교 내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위반 시 관련 학생의 생활교육, 학교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본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정직하고 창의적인 학생 상을 형성하게 하며,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및 제4항(학칙을 제정, 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및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방침】

본 규정에서 교내 생활이라 함은 학생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의 생활을 말하며 교외 생활이라 함은 교내 생활을 제외한 생활을 말하며 학생은 국가와 사회가 기대하는 선량한 학생이 되려고 항상 힘써야 하며 교사는 학생의 좋은 점을 발견하며 이를 이끌어주고 특히 학생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처벌에 앞서 사전 예방지도에 전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폐할 것을 안내한 후 철폐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폐할 수 있다.

제8조 【범위】

본 규정은 가평중학교 학생에게 적용된다.

제2장 교내 생활

제9조 【결석】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제10조 【질병결석, 무단결석 및 기타결석】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제11조 【지각, 조퇴 및 결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제12조 【복장】

복장은 교복선정위원회에 의한 가평중학교 교복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제11조(별첨 1)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복은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색상과 모양을 준수해야 한다.
- ③ 여학생의 바지와 치마 교복 선택권을 보장한다.
- ④ 동절기 교복 위 외투를 입을 때 불편한 경우 교복 자켓을 벗고 입을 수 있다.

제13조 【학생명찰 및 교표의 착용】

- ① 교내에서는 학생명찰(비고정식)을 왼쪽가슴 주머니 위에 착용하여야 한다.
- ② 명찰 규격은 6cm×2cm, 글씨체는 명조체, 검정색으로 한다.

- ③ 학년구분을 위하여 녹색, 흰색, 노란색으로 바탕색을 하며, 신입생은 졸업생의 명찰양식을 승계한다.
- ④ 교표는 왼쪽 가슴 주머니 앞부분에 패용한다.

제14조 【두발 및 용의】

-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남녀 모두 두발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는다.
- ③ 파마나 염색등의 과도한 머리 모양의 변형은 학생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학생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신발, 가방】

- ①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하되 체육시간에는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② 실내화를 착용할 경우 실내에서만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언어】

학생은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명료하고 친절한 언어를 사용토록 하며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행동】

학생은 규율과 질서 및 공중도덕을 지키고 협동심과 교우애를 발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 ① 학생은 교사의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지도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등교 후 무단으로 외출 및 조퇴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학생은 학교 시설 및 교구를 항상 애호하여야 하며 파손 시 변상한다.
- ④ 학생은 고사를 기피하거나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⑤ 학생은 어떤 폭력행위나 절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⑥ 학생은 흡연 및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⑦ 학생은 규정된 시간에 식사를 하여야 하며, 실내에서는 난잡한 행동이나 고성방가를 해서는 안 된다.
- ⑧ 학생은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방뇨를 해서는 안 된다.
- ⑨ 상·하급생은 서로 애호지도 및 존경하여야 한다.
- ⑩ 학생이 습득한 물건은 학교에 신고하여 분실한 사람에게 찾아 주도록 한다.
- ⑪ 휴대전화기는 학교에 가져올 수 있으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규 수업시간이 시작되기 전 담임교사에게 맡기는 것을 권장한다.(용무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돌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⑫ 수업 시간에 불가피하게 보건실을 이용할 경우, 보건 교사와 교과 교사의 허락을 받고 기타 수업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 ⑬ 수업 외 시간에는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 및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현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⑭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등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해야만 한다.
- ⑮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이성간 예절을 지키고,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밀폐된 장소를 피하고, 과도한 신체 접촉 등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예절】

학생은 교직원 및 학생 상호간 또는 학교를 방문 중인 외래 손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의를 표시한다.

- ① 실내·외에서 공수인사로 인사한다.
- ② 상급생은 하급생에게 배려를 하급생은 상급생에게 존중을 표한다.

제19조 【주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20조 【청소】

학생들은 청소를 통하여 근로와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

- ① 매일 방과 후에는 각 학급별로 교실 및 담당구역을 청소하며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 ②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특별 청소를 실시한다.

제21조 【환경정리】

학교의 시설물 및 학급의 비품을 주인의식을 갖고 잘 관리하여 명량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 할 수 있어야 한다.

제22조 【소지품 검사】

- ① 전체학생 대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되고, 개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검사 대상 학생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
- ② 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지도교사가 진행한다.
- ④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안전생활교육부 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를 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과 담배, 라이터, 도박에 관련된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제3장 교외생활

제23조 【복장】

외출 시에는 학생 신분에 맞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제24조 【행동】

학생은 교외에서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① <삭제>
- ② 학생 출입금지 장소(다방, 유흥장 및 기타 장소) 무단출입 및 배회 - 노래방, PC방, 당구장, 찜질방 등은 오후 10시 이후 출입금지(청소년 보호법)
- ③ 흡연 및 음주, 본드 흡입, 부탄가스 흡입, 약물남용 등
- ④ 개인형 이동장치(오토바이, 킥보드) 운전 및 탑승
- ⑤ 고성방가
- ⑥ 언쟁, 협박, 구타, 집단폭행 및 불량서클 가입
- ⑦ 절도 및 공공물 파손 행위
- ⑧ 기타 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로서 학생의 신분에 반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25조 【여행】

학생이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고 여행(휴일 및 방학기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교에 알려야 한다.

제26조 【교사의 지도】

교사는 학생의 교외 생활지도를 위해 수시로 보호자와 상담하고 필요시에 가정을 방문 할 수 있으며, 학생은 교외에서 본교 교사와 교외생활을 지도하는 타교 교사의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4장 정보통신

제28조 【사이버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 ⑨ 정보통신 윤리헌장을 준수한다.
- ⑩ 사이버 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 시 현실로 만남의 관계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 ⑪ 소비자보호법의 사이버 상 물품구매는 부모의 허락을 받은 후 주문 혹은 부모 입회하에 구매하도록 한다.

제29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휴대전화기는 정규 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 담임교사에게 자율적으로 제출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의견 제출 후 소지할 수 있다.
- ② MP3는 소지할 수 있으나 수업 중에는 사용할 수 없다.
- ③ 고사기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및 디지털 전자기기 등은 개인 소지를 금한다.
- ④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⑤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0조 【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생활규정

제31조 【학생생활규정 목적】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도처분 등)와 경기학생인권조례에 의거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교육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2조 【학생생활규정 방침】

- ① 학생 지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② 학생지도는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상담)으로 하되, 체벌을 금지한다.
- ③ 학생 선도와 관련된 위원회 개최 시 보호자는 학교에 내교하여 사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④ 학생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品行과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참작하여 그 사유의 경중

에 따라 선도처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 ⑤ 학생 선도 시 그 선도처분 사항을 이행하는 학생은 그 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하여야 한다(단, 출석정지기간은 제외함).
- ⑥ 선도처분 중의 학생이더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하며, 고사 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 ⑦ 같은 사안으로 연속하여 선도처분을 받을 때는 다음 단계의 선도로 이행한다.
- ⑧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는 공고하지 않는다.

제33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는 교감(위원장), 학생생활교육(관련)부장(부위원장), 교육기획부장, 각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학년별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5인 이상 10인하로 구성한다.

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학생들의 생활규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기능

가.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나.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라.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라.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마.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바.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사.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아.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자.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서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차.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써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제34조 【선도처분의 원칙】

선도처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선도처분을 실시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처분을 내리되,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선도처분 기간 중 제35조 선도처분의 종류 제2항,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 처리하도록 하며 고사기간 중에는 고사에 응하도록 한다. 단 시험 및 학교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③ 출석정지 기간은 생활기록부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기재한다.
- ④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는 교원(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생활지도교사, 교감, 교장)이 상담을 요청 할 시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 ⑤ 선도처분에 따른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선도처분의 종류와 기간】

- ① 학교 내 봉사(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총 10시간 이내)
- ② 사회봉사(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총 25시간 이내)
- ③ 특별교육 이수(총 30시간 이내)
- ④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제36조 【선도처분의 방법】

- ①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년별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
- ④ “출석정지”는 초, 중등교육법 상의 징계는 병과할 수 없는 바 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정학습을 부과하거나 특별교육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37조 【출석 인정】

제35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선도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나 제4항 출석정지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38조 【선도처분의 세부사항】

① 단계별 선도처분

가. 1단계(약속단계): 담임교사 중심 학교인권교육 책임제 운영

-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상담 및 교육을 통한 바른 생활실천 약속

나. 2단계(약속준수단계): 1단계 지도 누계 3회 이후

- 학년부의 지도 및 가정의 협조
- 바른 학교생활 약속준수 캠페인 활동 및 교내봉사 활동

다. 3단계(선도처분 단계): 2단계 지도 누계 3회 이후 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시 적용

-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 선도처분 조치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선도처분 적용(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선도처분 시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교육적 방법으로 최후까지 선도처분

② 학교 내 봉사

가. 학교 내 봉사 프로그램에 의거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한다.

나. 학교 내 봉사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및 학년부 교사의 지도 아래 교내 환경 미화 작업 및 기타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다. 처벌기간 중 자아 성찰문을 제출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라. 선도처분 일수는 등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결석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지도한다.

③ 사회봉사

가. 사회봉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지역 복지시설이나 행정기관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공공기관 봉사(우편물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등 학교장이 지정한 곳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나. 사회봉사 활동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봉사 활동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는 사고 결석처리하고 사회봉사 활동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사회 봉사자는 사회봉사 활동 확인서를 반드시 학년부에 제출한다.

라. 시간과 기간은 사회봉사 활동 처분 결정 시 명시한다.

④ 특별교육 이수

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습흡연자·약물, 마약, 환각, 알코올중독자 등은 해당치료기관과 협의·치료 이수를 실시한다.

다. 행동·심리장애우 등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 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교육을 이수한다.

라. 특별교육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출석정지

- 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가정학습을 부과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⑥ 기타

- 가. 제35조 제2항~제4항에 해당하는 선도처분 사실은 학생생활교육대장에 기록·관리하며, 추수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 나. 제35조 제1항과 제2항의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봉사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수련회 등)와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 라.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마. 학교는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의 선도를 받은 학생 중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바.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제39조 【재심의 요구 또는 신청】

- ①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 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 하도록 안내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를 유보한다.

제40조 【재심의 여부 결정】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41조 【재심의】

- ①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을 실시한다.
- ② 원 조치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③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제42조 【학교장 조치】

- ①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 ②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 ③ 조치 이행

재심의 절차 단계

단계	내용
이의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심의 여부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의 요구 접수 2일 이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심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의 요구 접수 14일 이내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원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 재심의 한 결과가 퇴학 처분(고등학생의 경우)인 경우, 학교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학교장 결재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서면 통지 → 선도 조치 시행

제43조 【심의 확정】

선도처분 사안에 대하여는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제44조 【선도처분 내용 통보】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41조 【선도처분 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선도처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자는 시험기간을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2조 【선도처분 경감】

선도처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3조 【선도처분 해제】

학교장은 선도처분 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도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선도처분 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선도처분 해제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추수지도】

상담교사 및 해당 담임교사는 선도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상담 누가 기록을 작성하여 추후 지도에 참고한다.

제45조 【징계사실의 공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 교사에게 학생의 징계 사실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안내하여 누설에 유의해야 한다.

제46조 【선도처분 대상 및 적용 기준표】

호	선 도 내 용	선도 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언행이 불량하여 교직원 및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통보된 학생	○	○	○	○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겨진 학생은 교권보호규정에 의해 선도한다)	○	○	○	○
3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탑승 금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	○	○	○	○
4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5	학생이 휴대할 수 없는 물건을 휴대한 학생 (담배, 라이터, 전자담배, 음란물, 흡기등)	○	○	○	○
6	선도처분에 따른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7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인장, 제증명 등)	○	○	○	○
8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관련된 학생	○	○	○	○
9	휴대폰을 3회 이상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학생	○	○	○	
10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	○	
11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12	이성간 교제로 공동체 질서를 문란(팔짱, 포옹, 키스, 무릎위 앉기 등)하게 하거나 교내·외에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13	청소년 유해 약물을 복용하거나 흡입한 학생	○	○	○	
14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15	도박을 하거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참여를 강요한 학생	○	○	○	○
16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7	교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18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19	미인정(지각, 조퇴, 결과)를 반복하여 그 총합이 4회 이상 반복하고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학생	○	○	○	○
20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1회		교내봉사 3일	
		2회		교내봉사 5일	
		3회		사회봉사 5일	
		4회이상		○	○
21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자비변상)	○	○	○	○
22	사이버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		○	○	○
23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4	수업 또는 학교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선동하는 학생	○	○	○	○

제6장 학생자치

제47조 【명칭 및 목적】

가평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48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학생은 그 기간 동안 회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9조 【권리, 의무】

본회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50조 【학생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 【학생의 참정권 보장】

- ①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기능】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①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②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및 각종의 봉사활동
- ③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④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 ⑤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52조 【효력정지】

본회의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53조 【임원】

본회는 본교 학생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1인
- ③ 각 부의 부장 1인 및 서기 1인
- ④ 각 부의 차장 1인

제54조 【임무】

회장은 학생자치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부 부장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각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총무부 : 학생자치회의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필요한 사무
- ② 학예부 : 학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 등에 관한 사항
- ③ 교육급식부: 급식운영 전반 모니터링, 급식개선을 위한 의견 논의
- ④ 또래상담부: 회원의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 ⑤ 봉사부 : 방송부 활동, 학예활동 지원 봉사, 각종 행사시 봉사 사항
- ⑥ 미화부 : 학교의 환경 미화 관리 및 청소·화장실 문화 정착 운동
- ⑦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⑧ 독서부 : 독서 교육에 관한 사항
- ⑨ 서기 : 학생자치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제55조 【대의원회】

학생자치회 심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① 대의원회의 구성은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전체학년 각 학급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 ② 대의원회의 기능은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학생자치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및 심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③ 대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실시한다. 정기회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의 재적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학생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④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56조 【학생자치회 선거】

학생회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첨2>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규정에 준한다.

제57조 【학급회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본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교생이 자치적으로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학생 자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훌륭한 교풍을 확립함에 있다.

제58조 【학급회 회원】

본 회의 회원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59조 【학급회원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회칙을 준수하여 학생의 본분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60조 【학급회 조직】

학급회는 학급 부서의 임원을 두어 학급 내 모든 학생의 자치활동을 대표하고 모든 학급원은 각 부서의 하나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61조 【임원의 구성 및 임무】

- ① 회장은 1명으로 학급회의 학급회 계획 및 관리 등 일체의 임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1명으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의 임무를 대행한다.
- ③ 서기는 1명으로 회의 기록을 담당한다.
- ④ 각 부장은 1명으로 각 부의 활동이 원활히 되도록 계획 및 관리한다.

제62조 【활동부서 및 관장사항】

학급회의 활동 부서 및 관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총무부 : 학급의 제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미화부 : 환경 미화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③ 학예부 : 학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활동에 관한 사항
- ④ 도서부 : 학급 문고 관리 및 제반 문예 활동에 관한 사항
- ⑤ 체육부 : 학급 위생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⑥ 봉사부 : 봉사 활동 및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 ⑦ 교육급식부 : 급식운영 전반 모니터링, 급식개선을 위한 의견 논의
- ⑧ 서기 : 학급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제63조 【학급회임원 선거】

학급회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첨2>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규정에 준한다.

제7장 학생생활인권규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64조 【명칭】

본위원회는 “가평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제65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 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 【적용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67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 절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68조 【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위원정수	위원장	위원의 구성			임기**
		구분	구성 방법	세부방법	
위원장 포함 8명~12명	위원 중 호선	교원	선출	- 학생위원의 수 이하로 구성 - 교직원 회의에서 선출	1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학생	선출	- 특정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 - 위원회의 1/3이상 되도록 구성 -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불가피한 경우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	
		학부모	위촉 또는 선출*	- (위촉) 학부모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 - (선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	
			전문가	위촉	

제69조 【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0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단,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며,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개정 발의
-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개정 발의
-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개정 발의
-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개정 발의

제71조 【기능】

- ①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를 통한 개정안 발의
- ② 발의한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의 검토를 위한 문헌조사
- ③ 발의한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
- ④ 2항, 3항의 문헌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⑤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의 출석요구

제72조 【개정안 심의】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학교장 결재 후 최종 개정된 규정을 확정한다.

제73조 【개정안 심의 예외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는 거쳐야 함)

- ① 학생 생활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의 일부 문구나 기구의 명칭 등을 단순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 ② 상위 법령(조례, 지침 포함)의 제·개정 사항을 규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제74조 【공포 및 정보공시】

- ①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 ② 학교 정보 공시를 통하여 공시한다.

제75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7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구분	권장시기	내 용
안내	학년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인권규정 안내·연수·홍보 • 학교 홈페이지 탑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탑재 •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담은 소책자, 리플릿 제작·배부 • 가정통신문, 학부모 문자 메시지 발송, 설명회 개최 • 학교알리미 탑재 ※ 공시항목-교육활동(학교규칙 및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검토	학년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의견 조회 • 매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에 대한 의견 청취 •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 결과 반영 및 전년도 운영 평가 결과 반영 • 학부모총회, 학생자치회, 교직원 회의 의견 청취
제·개정	학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개정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사항 교육지원청 보고 • 제·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학교알리미 탑재(수시 공시 가능)
운영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 단계별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실시
	학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과정 상시 점검 • 학생 인권동아리 활동 • 학부모 총회 의견 청취 • 학교 홈페이지 및 의견 게시판 • 교직원 회의
결과 평가	학년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결과 평가·환류 • 의견수렴(학생·학부모·교원 운영 평가 설문조사) • 필요한 경우 다음연도 제·개정안에 반영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

절차	참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교원, 보호자, 전문가로 구성(8인~12인 내외로 구성) • 학생위원 수가 전체 위원 1/3이상 되도록 구성
↓	
제·개정안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생활인권 규정 개정안을 발의
↓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
↓	
제·개정 시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통해 제·개정 시안 마련
↓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제·개정안 확정
↓	
학교장 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확정 결과 결재
↓	
공포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학생과 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팝업창으로 공지
↓	
제·개정 규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공동체 대상 제·개정 규정 안내
↓	
적용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결과 평가·환류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분석

제8장 학업중단 예방

제76조 【학업중단 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부칙]

-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03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03년 5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04년 5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06년 5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3년 5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4년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5년 4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5년 8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7년 7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7년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2년 9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가평중학교 교복의 선정·변경 및 구매과정에서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학교 주관 교복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침】

- ① 공개입찰을 통한 학교 주관 교복 구매를 진행한다.
- ② 학교 주관 구매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다.
- ③ 모든 학생이 학교 주관 구매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복 물려 입기, 교복 장터 활용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복의 선정·변경, 품질 향상 및 합리적인 가격에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단, 교복 업계 이해관계자 참여 불가)
- ⑤ 선정업체 납품실적, 하자 이행 등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 ⑥ 교복 착용 이후 품질, 품질검사 기준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매 결과 평가’를 실시한다.
- ⑦ 초6(예비 중1)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이전에 상급학교 교복 구매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제3조 【운영】

- ① 구성: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표 등 8명 이상으로 구성
가. 학교장, 행정실장, 교복업계 이해관계자인 교직원, 학부모 등은 위원으로 위촉 불가
나.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학생 비율 50% 이상으로 구성
다. 구성시기는 매년 3월 ~ 4월
- ② 임 기: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선출: 학부모회 위원은 매년 학부모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한다.
- ④ 직 무
가. 위원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은 회계업무 및 각종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 ⑤ 운 영: 위원장은 필요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며 제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⑥ 역 할: 신입생 교복(생활복 포함)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추진 일체
가. 교복 구매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나. 교복 구매 관련 학부모 여론 수렴 및 구매 희망자 수 조사
다. 교복 사양(디자인, 원단 등) 조사, 교복 샘플과 교복 제조 사양서 작성

- 라. 교복업체 선정 기준, 입찰 방식 등에 대한 규정 제정
- 마. 교복 입찰 설명회 개최
- 바. 교복 가격 결정 및 공개 입찰 주관
- 사. 교복 업체 선정 및 직접 계약 체결
- 아. 교복 제작 과정 감독 및 하자 처리
- 자. 매뉴얼과 일지 정리 보관

제4조 【교복디자인 선정·변경 및 공개】

- ① 교육청 제시 표준 교복 디자인, 기존 교복에 대한 검토,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학교 교복 디자인을 선정 한다.(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
- ② 교복의 재질, 디자인, 색상을 선정하고 안감, 단추 등 세부 사항 등의 사양서를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칭한다.)에 명문화 한다.
- ③ 교복 디자인 변경시 반듯이 1년 이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 ④ 사양서와 사진, 규정 등을 학교 규정집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교복 구매 계획 및 예산 편성에 대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6조 【학교 주관 교복 입찰 방법】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도모할 수 있도록 2단계 경쟁입찰(품질 → 가격)을 통한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제7조 【수납 및 학교회계 처리】

- ① 학교 주관 구매'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확정하여, '교복 물려 입기' 등 수요를 제외한 '학교 주관 구매' 참여규모를 확정하고 구매 추진한다.
- ② 3월 입학 시 동복착용의 경우 입학대상자가 정해지면, 예비소집일 등을 통해 가급적 빨리 참여규모를 확정하고 회계 처리한다.
- ③ 구매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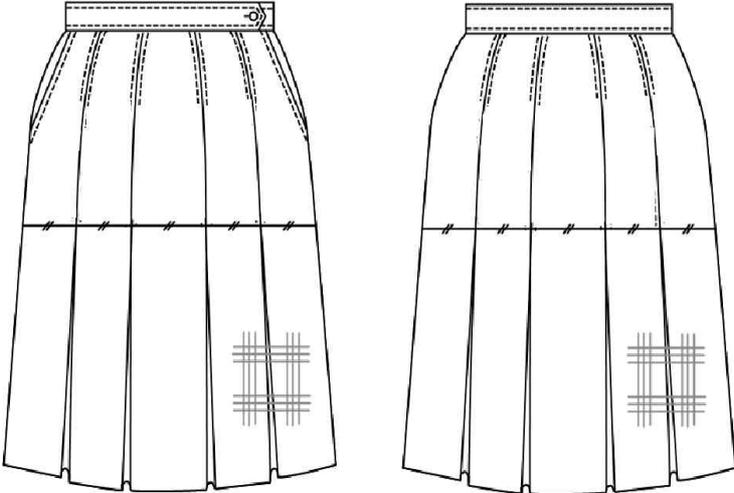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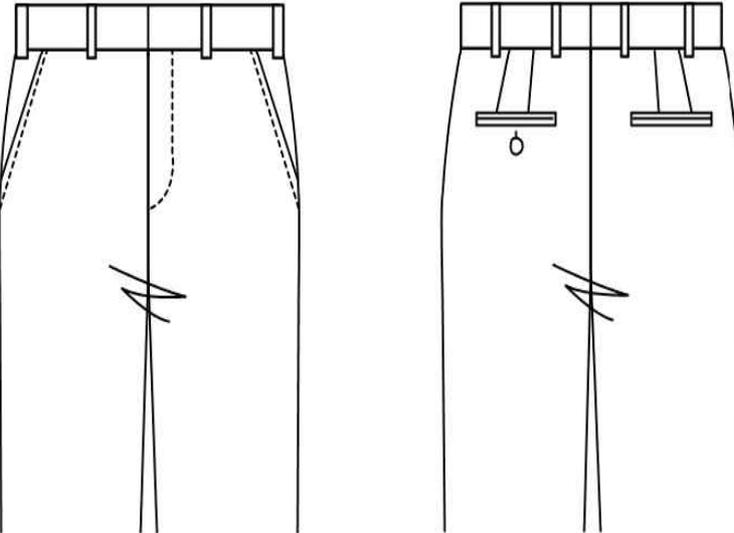
< 계약 시 확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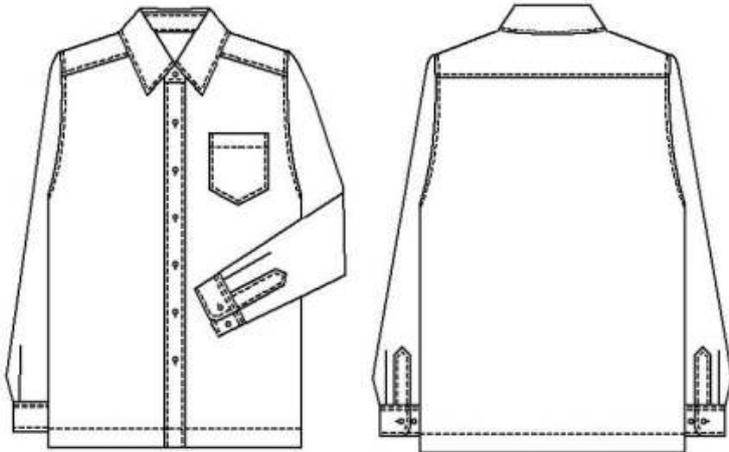
- 무상 A/S 기한(1년 이상), 처리과정 등
- 교복 착용 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 규정에 따른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지급각서 등 제출
-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요청
-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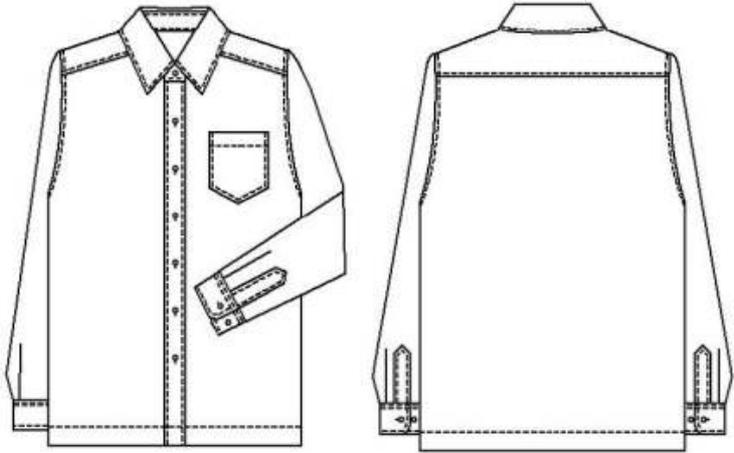
- ④ 학교주관 구매를 신청한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고 행정실이 지출한다.
- ⑤ 학교에서는 학교 회계 절차에 따라 수입처리 및 지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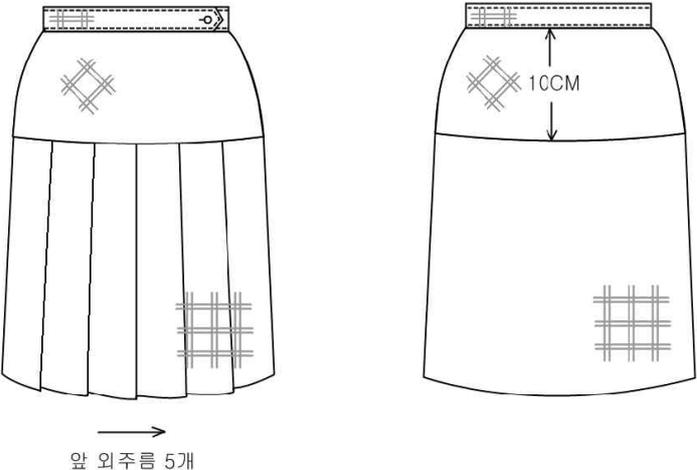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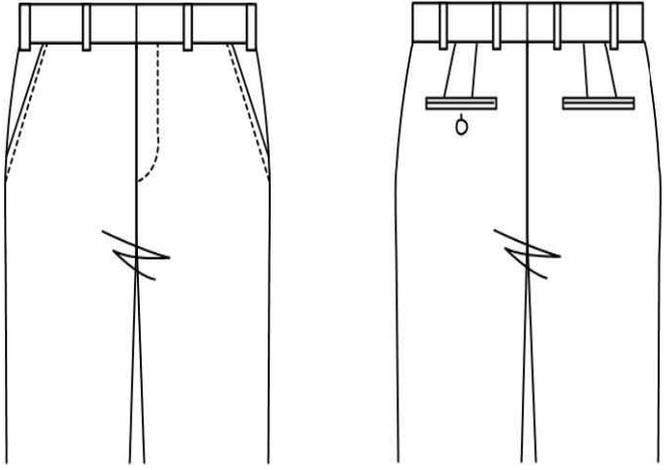
제8조 【교복 디자인】 <교복 외양은 별첨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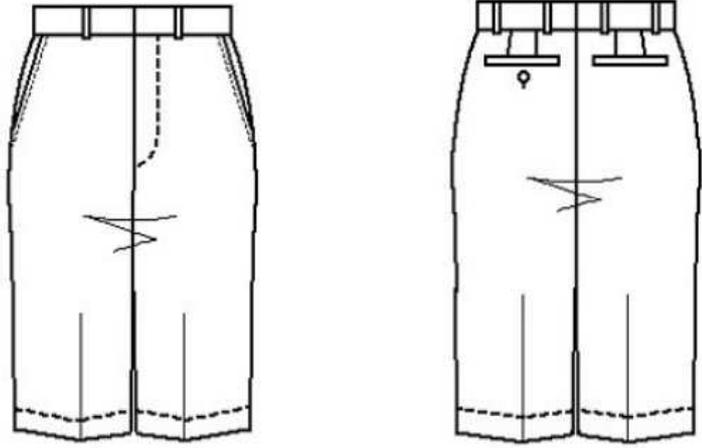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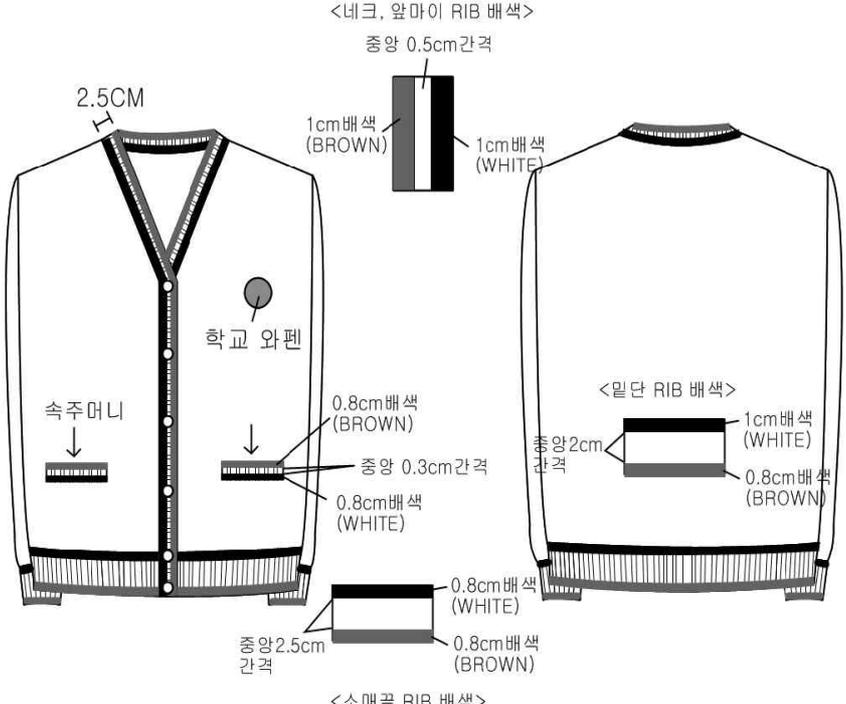
<p>여학생 동복 재킷</p>	
<p>특징 및 제작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색상 : 걸감(BROWN), 배색(RED CHECK) 2. 특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체패턴을 사용하여 슬림핏 연출 - 자켓 안쪽 안심주머니로 분실방지 효과 3.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썬카라 3버튼 자켓 디자인 - 카라~밑단 콤비배색 - 와펜 부착
<p>남학생 동복 재킷</p>	
<p>특징 및 제작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색상: 걸감(BROWN) 배색(DARK GRAY) 2. 특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체패턴을 사용하여 슬림핏 연출 - 자켓 안쪽 안심주머니로 분실방지 효과 3.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썬카라 3버튼 자켓 디자인 - 카라~밑단 콤비배색 - 와펜 부착

<p>여학생 동복 치마</p>	 <p style="text-align: center;">* 앞뒤 맞주름 4개씩</p>
<p>특징 및 제작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색상 : 걸감 (RED CHECK) 2. 특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조절기 부착으로 허리사이즈 조정가능 - 양쪽 콘솔지퍼로 주머니 벌어짐 방지 효과 3. 디자인: 앞, 뒤 맞주름 4개씩 <p>※ 규정사항 : 기장48cm이상 스티치10cm이하 (68사이즈 기준)</p>
<p>남학생 동복 바지</p>	
<p>특징 및 제작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색상 : 진회색메란지 무지 2. 특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조절기 부착으로 허리사이즈 조정가능 - 입체패턴을 사용하여 슬림핏 연출 3. 디자인: NO-TUCK 신사바지

<p>남·여 니트 조끼</p>	
<p>특징 및 제작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색상 : 백아이보리 무지 2. 특징점: 이중조직 원단으로 따뜻함과 부드러운 터치감 3.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브이 네크 조끼 - 앞판 전체 까배기 - 네크아래 배색적용 - 와펜 부착
<p>여학생 동복 셔츠</p>	
<p>특징 및 제작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색상 : 걸감(WHITE) 2. 특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체패턴을 사용하여 슬림핏 연출 - 목 뒤배색으로 늘어남방지 및 원단오염 방지 3. 디자인: 기본 백색 와이셔츠

<p>남학생 동복 셔츠</p>	
<p>특징 및 제작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색상 : 백색 무지 2. 특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체패턴을 사용하여 슬림핏 연출 - 목 뒤배색으로 늘어남방지 및 원단오염 방지 3. 디자인: 기본 백색 와이셔츠
<p>남·여 하복 생활복</p>	
<p>특징 및 제작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색상 : 곤색 무지 2. 소재: 양면 피케 3. 특징점: 등판메쉬 및 땀받이로 산뜻함 유지 4.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카라 반팔티 - 카라 단면배색 - 소매 파이핑배색 적용 - 와펜 부착

<p>여학생 하복 치마</p>	<p style="text-align: center;">*주름간격 균등분할</p>  <p style="text-align: center;">→ 앞 외주름 5개</p>
<p>특징 및 제작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색상 : 블루(그레이) 체크 2. 특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조절기 부착으로 허리사이즈 조정가능 - 양쪽 콘솔지퍼로 주머니 벌어짐 방지 효과 3. 디자인: 요크 와주름 스커트 <p>※규정사항 : 기장48cm이상 스티치10cm이하 (68사이즈 기준)</p>
<p>남학생 하복 바지</p>	
<p>특징 및 제작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색상 : 베이지 무지 2. 특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조절기 부착으로 허리사이즈 조정가능 - 엉덩이 메쉬안감으로 쾌적함 및 미어짐 방지 3. 디자인: NO-TUCK 신사바지

<p>하복 반바지</p>	
<p>특징 및 제작시 유의사항</p>	<p>색상: 진곤색 무지</p> <p>2. 특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조절기 부착으로 허리사이즈 조정가능 - 엉덩이 부분 메쉬안감으로 쾌적함 유지 <p>3. 디자인: NO-TUCK 반바지</p>
<p>남·여 학생동복 가디건</p>	 <p><넥, 앞마이 RIB 배색> 중양 0.5cm간격</p> <p>1cm배색 (BROWN) 1cm배색 (WHITE)</p> <p>2.5CM</p> <p>속주머니</p> <p>학교 와펜</p> <p>0.8cm배색 (BROWN) 0.8cm배색 (WHITE)</p> <p>중양 0.3cm간격</p> <p><밑단 RIB 배색></p> <p>1cm배색 (WHITE) 0.8cm배색 (BROWN)</p> <p>중양 2cm간격</p> <p>0.8cm배색 (WHITE) 0.8cm배색 (BROWN)</p> <p>중양 2.5cm간격</p> <p><소매끝 RIB 배색></p>
<p>특징 및 제작시 유의사항</p>	<p>1. 색상 : 멜란지회색 무지</p> <p>2. 특징점: 이중조직 원단으로 따뜻함과 부드러운 터치감</p> <p>3. 디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브이넥 가디건 - 넥~앞마이 시보리끝 배색 - 주머니, 소매 상/하단, 밑단 상/하단 배색 - 와펜 부착

남·여학 생넥타이		
특징 및 제작시 유의사항	1. 색상 : 걸감((RED CHECK) 남녀동일 원단 2. 단, 남자용/여자용 사이즈 별도임	
기타 부자재		
	와펜	단추

제9조 【교복 사양서】

구분	품목 (남학생)	섬유 혼용률	품목 (여학생)	섬유 혼용률
동복 (춘추복)	재킷	걸감(울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 66수 개버딘 원단), 안감(폴리에스터 99%, 은가공섬유 1%)	재킷	걸감(울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 66수 개버딘 원단), 안감(폴리에스터 99%, 은가공섬유 1%)
	셔츠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셔츠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조끼	모 50%, 아크릴 50%	조끼	모 50%, 아크릴 50%
	바지	걸감(모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 66수 개버딘 원단) 안감(폴리에스터 99%, 은가공섬유 1%)	치마	걸감(울 60%, 폴리에스터 40% - 66수 개버딘 원단) 안감(폴리에스터 99%, 은가공섬유 1%)
	넥타이	걸감(울 60%, 폴리에스터 40%), 안감(폴리에스터 99%, 은가공섬유 1%)		
	가디건	울 50%+아크릴 50%		
하복 (생활복)	상의	폴리에스터 100%	상의	폴리에스터 100%
	긴바지	걸감(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 66수 개버딘 원단) 안감(폴리에스터 99%, 은가공섬유 1%)	치마	걸감(울 60%, 폴리에스터 40% - 66수 개버딘 원단) 안감(폴리에스터 99%, 은가공섬유 1%)
	반바지	걸감(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 단, 교복 원단 시장과 수요자의 여건 및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 가능

제10조 【제작 시 유의사항】

- ① 동복 재킷 속주머니 윗부분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 ② 치마, 바지, 조끼, 셔츠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 ③ 안감에 참여업체의 브랜드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징 표식이나 문양이 없는 원단을 사용할 것

<상의>

- ① 길이-춘추복, 동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조끼(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 ② 품-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치마>

- ① 길이-무릎 슬개골 부분 이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바지>

- ① 길이-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 ② 바지통-7과1/2인치 이상(일자바지 형태)

<기타>

- ① 동복 재킷 속주머니 윗부분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 ② 치마, 바지, 조끼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제11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교복선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 후 결정한다.

[부칙]

제1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후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개정 및 시행】

본 규정은 201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교복 외양



동복 (남학생)



동복 (여학생)



생활복(남학생)



생활복(여학생)



반바지



춘추복 (남학생)



춘추복 (여학생)



가디건 (남·여)



교표



단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관리 규정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가평중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관리 규정’이라 한다. 가평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자치 활동을 통한 민주주의적인 학교 문화 정착을 도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정직하고 창의적인 학생상을 형성하게 하고,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하도록 바른 선거의식을 학생에게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및 제4항(학칙을 제정, 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한다)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방침】

이 규정에서 학생자치라 함은 교사의 주도가 아닌 학생들 스스로의 협의 및 토의 과정을 통한 민주주의적인 의사 결정을 말하며, 교사는 학생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주의적이고 수평적인 의사 결정이 되도록 학생자치 활동을 돕기 위한 지도에 전력하여야 한다.

제5조 【범위】

이 규정은 가평중학교 학생에게 적용된다.

제6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7조 【권리, 의무】

본회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 【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아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지도기구】

본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기능】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으며, 모든 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①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②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및 각종의 봉사활동
- ③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④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 ⑤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11조 【효력정지】

본회의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12조 【임원】

본회는 가평중학교 재학생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1인
- ③ 각 부의 부장 1인 및 서기 1인
- ④ 각 부의 차장 1인

제13조 【임무】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학생자치회 대표로 참석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부 부장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각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총무부 : 학생회의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필요한 사무
- ② 학예부 : 학예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 등에 관한 사항
- ③ 교육급식부 : 급식운영 전반 모니터링, 급식개선을 위한 의견 논의
- ④ 또래상담부 : 회원의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 ⑤ 봉사부 : 방송부 활동, 학예활동 지원 봉사, 각종 행사시 봉사 사항
- ⑥ 미화부 : 학교의 환경 미화 관리 및 청소·화장실 문화 정착 운동
- ⑦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⑧ 독서부 : 독서 교육에 관한 사항
- ⑨ 서기 : 학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제14조 【대의원회】

학생회 심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① 대의원회의 구성은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전체학년 각 학급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 ② 대의원회의 기능은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및 심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③ 대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실시한다. 정기회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의 재적 3분의 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④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학생자치회 임원선출 및 자격】

- ① 회장 입후보자 1인과 부회장 입후보자 1인은 함께 입후보(러닝메이트)하여 출마한다.
- ② 회장단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하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최다득표자에게 회장과 부회장의 당선증을 주며, 각 부서의 임원은 당선된 학생회장이 추천이나 공모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③ 정·부회장의 선출 시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중에 실시하며, 정·부회장의 입후보자 등록은 등록원서 1부를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공고한다.
- ④ 학생회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급 담임교사와 학생 30명 이상의 서면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선거운동은 등록 후 실시할 수 있으나 금품수수 및 폭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당선 이후라도 무효가 된다.
- ⑥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 ⑦ 학급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학생들이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16조 【회의】

제45조 대의원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7조 【의결】

학생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임기】

본 회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 재임한다.

제19조 【선거 목적】

이 규정은 가평중학교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 ②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3주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 ③ 선관위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1학년 ~ 3학년 희망자 중에서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의 무기명 다수대표제로 7 ~ 9인으로 구성한다.
- ④ 선관위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나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⑦ 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⑧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21조 【선거일 공고】

선관위는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늦어도 선거일 14일 이전까지 선거(투표, 개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가평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23조 【투표자 명단 작성】

-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붙임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제24조 【후보자 자격】

- ①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제25조 【후보자 등록 및 공고】

- ① 입후보자 등록 : 학생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후보자 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서류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선거권자 30인 이상 서명 날인된 추천서 1부), 등록서약서 1부, 공약서 1부 이다.)
- ② 입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부여한다.
- ③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익일 09:00까지 입후보자 명단을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 ④ 입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선관위에서 교부받는다.

제26조 【등록무효와 사퇴】

- ① 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선관위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하되, 선거운동 시간은 등교시간 (08:50 이전), 쉬는 시간, 식사 시간을 이용하고 학교의 교육활동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 【후보자 홍보포스터】

-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포스터 4매(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일 다음날까지 선관위에 내야한다.
- ② 선관위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29조 【소견발표회】

-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선관위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⑤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 도우미 중에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발표회에서 지원연설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 【어깨띠·피켓 등】

-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선관위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 ①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 1. 경고 사유의 행위
 - 가. 후보자 간 다툼
 - 나.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인 행위
 -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 ② 선관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선관위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32조 【선거비용】

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33조 【투표】

-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붙임 제 10호 서식)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선관위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 ③ 선관위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⑤ 선관위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 ⑥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1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선관위에 내야한다.
-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제34조 【개표】

- ①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1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선관위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 표를 한 것
 -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5. “○”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 표를 한 것
 -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3. “○”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 ⑧ 선관위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 【당선인 결정】

- ① 선관위는 개표결과 입후보(러닝메이트)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당선

인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팀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승인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팀 이상이 경우에는 학생자치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선관위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36조 【재선거】

-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 1.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 2.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37조 【보궐선거】

- ① 회장과 선임학년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후보가 없을 경우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38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붙임 제1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선관위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39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

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0조 【학급자치회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본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교생이 자치적으로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학생 자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훌륭한 교풍을 확립함에 있다.

제41조 【학급자치회 회원】

본 회의 회원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42조 【학급자치회 회원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회칙을 준수하여 학생의 본분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43조 【학급자치회 조직】

학급회는 학급 부서의 임원을 두어 학급 내 모든 학생의 자치활동을 대표하고 모든 학급원은 각 부서의 하나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44조 【임원의 구성 및 임무】

- ① 회장은 1명으로 학급회의 학급회 계획 및 관리 등 일체의 임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1명으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의 임무를 대행한다.
- ③ 서기는 1명으로 회의 기록을 담당한다.
- ④ 각 부장은 1명으로 각 부의 활동이 원활히 되도록 계획 및 관리한다.

제45조 【활동부서 및 관장사항】

학급회의 활동 부서 및 관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총무부 : 학급의 제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미화부 : 환경 미화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③ 학예부 : 학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활동에 관한 사항
- ④ 도서부 : 학급 문고 관리 및 제반 문예 활동에 관한 사항
- ⑤ 체육부 : 학급 위생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⑥ 봉사부 : 봉사 활동 및 쓰레기 분리 수거에 관한 사항
- ⑦ 교육급식부 : 급식운영 전반 모니터링, 급식개선을 위한 의견 논의
- ⑧ 서기 : 학급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제46조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학기로 한다. 단, 임기 중 결원되었을 때는 후임자를 선출하여 잔여 임기를 승계 한다.(회장의 잔여 임기가 1/2 이 남지 않았을 때 부회장이 승계하고 부회장의 경우에는 학급회에서 다시 선출한다.)

제47조 【학급자치회 임원 선출】

- ① 학급선거는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급선거관리위원회로 위임하여 관리한다.
- ②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회장, 부회장 순으로 하며, 선거 절차는 입후보자의 이름을 자모순으로 기록 공고하고, 투표에 앞서 입후보자는 자기 소견을 발표한 다음 투표용지는 사전에 담임이 날인하여 준비하고 투표용지 1매에 1인만 기록하게 하고 2인 이상의 기록은 무효로 처리한다. 선거관리위원(개표요원 2명, 입회 1명)은 담임교사가 임명, 업무를 맡게 한다.
- ③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학생자치회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학급자치회 임원 당선】

- ① 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의 과반수의 최다 투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상위 2명으로 결선 투표를 하여 당선자를 확정한다.
- ② 선관위는 당선인에게 학생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붙임 서식 목록

1. 위원공고
2. 선거일공고
3. 투표자명단
4. 후보자등록신청서
5. 추천장
6. 후보자등록공고
7. 후보자사퇴신고서
8. 후보자(등록무효)(사퇴) 공고
9.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10. 투표용지(예시)
11. 투표 및 개표참관인 신고서
12. 개표결과
13. 선거록
14. 당선자공고
15. 이의신청서
16. 당선증

게시문 목록

1. 공명선거 협조문
2. 투표 시 유의사항

[붙임 제1호 서식]

위 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 (직인)

위 원 명 단

구 분	학 년 · 반	성 명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붙임 제2호 서식]

선 거 일 공 고

년도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일정과 입후보자격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학교선거관리위원회(직인)

1. 선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후 보 자 등 록			
선 거 운 동 기 간			
합동소견발표회			
투 표 일			
개 표 일			

2. 후보자등록시 제출서류

-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나. 추천장 또는 추천서 1부.
- 다. 공약서 1부.

3. 입후보자격

- 가. 년 월 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2학년에, 부회장은 2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중인 자
- 나. 선거권자 30명이내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다. 성적 등의 이유로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붙임 제3호 서식]

투 표 자 명 단

학년 반

번 호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번호	성명	서명	비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성 자 : ○학년 ○반 학급자치회장 (서명)

※ 단,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붙임 제5호 서식]

추천장

▣ 추천후보자

○ 성 명 :

○ 학년·반 : 제 학년 반

위의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
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1부.

가평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일련번호	학년 · 반	성 명	서 명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10	학년 반		
11	학년 반		
12	학년 반		
13	학년 반		
14	학년 반		
15	학년 반		
16	학년 반		
17	학년 반		
18	학년 반		
19	학년 반		
20	학년 반		
21	학년 반		
22	학년 반		
23	학년 반		
24	학년 반		
25	학년 반		
26	학년 반		
27	학년 반		
28	학년 반		
29	학년 반		
30	학년 반		

[붙임 제6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후보자로 아래와 같
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임원선거 후보자 명단

회 장 후 보 자				부 회 장 후 보 자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1	학년 반			1	학년 반			1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붙임 제8호 서식]

후보자 (등록무효) (사퇴)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아래와 같이 (등록무효) (사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등록무효) (사퇴) 후보자 명단

구 분	기 호	후보자 성명	(등록무효) · (사퇴) 연월일	(등록무효) · (사퇴) 이유

※ 작성요령 : 구분란에는 “등록무효” “사퇴”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붙임 제9호 서식]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선거운동도우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선거운동도우미 명단

번호	학년·반	성명	선임·교체	비고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 교체시에는 ○○○와 교체라고 기재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서명)

가평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투 표 용 지 예 시

학년도 학생회장·부회장 선거			No. _____
기 호	성 명	선 거	
1	회장		
	부회장		
2	회장		
	부회장		
3	회장		
	부회장		

가평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붙임 제11호 서식]

투표와 개표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투표와 개표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투표참관인 명단

학년 · 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학년 반		

2. 개표참관인 명단

학 년 · 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년 월 일

후보자성명 : (서명)

가평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2호 서식]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선거

개 표 결 과

선거인수 (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호 투표수 (라)	기권수 (마)	투표율 (%) (나/가)
		1	2	3	4	5			

검 열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부위원장	위 원 장

가평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붙임 제13호 서식]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선 거 록

1. 투·개표

가. 투표장소 :

나. 개표장소 :

2. 투·개표 일시

가. 투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3. 투표상황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 분	회 장 선 거			부 회 장 선 거					
선거인수	인			인			인		
투표자수	인			인			인		
기권자수	인			인			인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1		표	1		표	1		표
	2		표	2		표	2		표
	3		표	3		표	3		표
	4		표	4		표	4		표
	5		표	5		표	5		표
무 효 투표수	표			표			표		

4. 당선자 명단

회 장			부 회 장		
기 호	후보자성명	학년 · 반	기 호	후보자성명	학년 · 반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제14호 서식]

당 선 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한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당선자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가평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당 선 자 명 단

회 장		부 회 장	
학년 · 반	성 명	학년 · 반	성 명

이 의 신 청 서

	학년 · 반	이 름
신 청 자		
이의신청건		
세부 설명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성명 _____(서명)

가평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당 선 증 (예시)

학년 반
성명

위 사람은 0000학년도 가평중학교 총학생회 정.
부회장 선거에서 회장(부회장)으로 당선되었
기에 이 당선증을 수여함.

0000.00.00.

가평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게시문 제1호]

공명선거 협조문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선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후보자는 규정에 위반된 선거운동을 하여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 여러분은 규정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기 준]

1. 경 고

- 후보자간 다툼
-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2. 후보자 등록무효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3. 당선무효

-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가평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투표 시 유의사항

투표 시에는 소중한 우리의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무효표가 됩니다.

[무효표 판정 기준]

1.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정규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투표용지가 찢어져 정규투표용지임을 알 수 없는 경우
3. 서로 다른 후보자의 기호란 또는 기표란 등에 2개 이상을 기표한 경우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하여 어느 후보자 쪽에 치우쳤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5. 정상적으로 기표를 했더라도 투표용지에 '좋다' 혹은 '홍길동' 등의 문자를 기입하거나 √, △, ☆ 등의 기호를 기입하는 경우
6. 정해진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경우

가평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